

# 권고사직합의서

\_\_\_\_\_(이하 "갑")과 근로자 \_\_\_\_\_(이하 "을")은 갑의 퇴직 권고를 을이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로 종료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회 사 명 | _____ | 대 표 자 | _____               |
| 주 소   | _____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근 로 자 | _____ | 생년월일  | 20____년 ____월 ____일 |
| 소속·직위 | _____ | 입 사 일 | 20____년 ____월 ____일 |

## 제1조 (퇴직일)

을은 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자로 퇴직하며,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같은 날 종료된다.

## 제2조 (퇴직 사유)

퇴직 사유는 \_\_\_\_\_으로 하며, 갑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 관련 신고를 이 사유에 맞게 사실대로 한다.

## 제3조 (위로금)

갑은 을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금 \_\_\_\_\_원整을 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. 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다.

## 제4조 (법정 금품의 지급)

갑은 퇴직일까지의 임금, 미사용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 등 법령에 따른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## 제5조 (인수인계 및 반납)

을은 퇴직일까지 담당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고, 회사 소유 물품과 자료를 반납한다.

## 제6조 (비밀유지)

을은 재직 중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.

## 제7조 (이의 제기)

갑과 을은 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서로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 다만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에 관한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갑 대표이사 : \_\_\_\_\_ (인)

을 (근로자) : \_\_\_\_\_ (인)